#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 요강

2006.8

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

#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 요강

#### 1. 지원목적

- · 남북관계, 북한연구, 통일과정 및 체제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
-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통일학을 정립하고
- · 서울대학교의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통일문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결 집시키며
-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뒷받침함

#### 2. 기본방침

- 연구과제를 기획과제, 자유과제, 논문지원과제,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 로 구분
- 연구단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접수 후 평가하여 선정 지원

- 기획과제 : 통일학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기

초자료의 수집·발굴 및 해제 (공동연구)

- 자유과제 : 통일학의 연구영역 내, 통일·통합 관련 자

유 주제 (단독연구/공동연구)

- 논문 지원 과제 : 소규모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(단독연구)

- |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| : 통일관련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통일관련

박사학위논문의 양적·질적 향상 도모 (단독

연구)

• 연구결과는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고, 공개발표시 통일포럼과 연계

#### 3. 지원내용

**가. 지원예산** : 530,000천원

• 기획과제: 150,000천원

• 자유과제 : 275.000천원

· 논문지원과제: 75,000천원

•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: 30,000천원

※ 통일학 관련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 지원은 연2회 별도 공고 예정

학술행사지원: 70,000천원국제교류지원: 30,000천원

#### 나. 개별과제 지원규모

• 기획과제: 40,000천원 이내

• 자유과제

단독연구: 20,000천원 이내
 공동연구: 40,000천원 이내
 소문지원과제: 5,000천원 이내
 학위논문지원과제: 6,000천원 이내

#### 4. 과제의 종류에 따른 연구 방식 및 연구 성과의 제출

#### 가. 연구방식과 연구영역

#### 기 획 과 제

-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함
- 2년 연구 가능
- 신청자격
  - ① 연구책임자 :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  - ② 공동연구워
    -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
    -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(원)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 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
    - 교외 연구자는 최대 50%범위까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
- ※ 위 본교 연구소(원)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 무하는 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구성할 경우 인건비는 연구참여율 등 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함
-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.000매 이상의 분량
- 수집한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 필수

- 。 연구영역
- 북한의 조직·제도 관련 자료 (IT, 교육, 보건의료, 경제, 여성 등)
- 남북한 비교 통계자료
- 통일·통합 관련 해외사례 자료

#### 자 유 과 제

- 단독연구
  - 신청자격 : 본교 전임강사 이상
-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
- 。 공동연구
  - 신청자격 :
    - ① 연구책임자 :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    - ② 공동연구원
      -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
      -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(원)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 으로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연구원
      - 교외 연구자는 최대 50%범위까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
  - ※ 위 본교 연구소(원)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제로 근 무하는 연구원을 공동연구원으로 구성할 경우 인건비는 연구참여율 등 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함
  -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.000매 이상의 분량
- 연구영역
  - 통일관련 비교연구: 학문영역(인문학, 사회과학, 경영, 법, 자연과학, 공학, 의학, 농생, 예술, 교육)별로 남북한비교, 통일, 체제전환 및 제도통합 사례
  - 남북한 교류, 대북정책 및 한반도 관련 국제관계 연구
  -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
  - 기타 통일학 관련 연구
- 연구주제 예시:
  - 남북간 기술ㆍ공학 분야 교류현황과 통합의 과제
- 통일 이후의 조세체계 통합과정 연구
- 남북 문화예술 교류로 본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개선방안
- 남북인의 정치의식 비교에 관한 경험적 연구

-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여성문제

#### 논문 지원 과제

-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함
- 신청자격
  - **교내외** 전임강사 이상 교원, 또는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소지자
- 연구결과물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함
-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 으로 함
- 연구영역
  - 자유주제와 동일

####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(연구장려금)

- 신청자격 :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
- 연구기간 : 3년 이내
- 연구영역
  - 북한·통일·통합 관련 주제
- 제출서류
  - 2006년도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(연구장려금) 지원신청서<서식 2>
  - 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추천·확인서 <서식 3>
- 신청 제한
  - 2007. 3월 이전에 학위취득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
  - \* 만약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07년 3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
  - 참여과제수의 제한 : 1인 1과제(단, 기획 및 자유과제 보조연구원으로 참여 가능)
- 연구장려금 지급 및 관리
  - ① 연구계약서 제출
    - 연구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소정의 연구계약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함
  - ② 연구장려금 지급 등
    - 지급방법 : 연구자가 소속된 관리기관(대학, 연구소 등)에 지급(1회)하여 중앙관리

- 관리기관의 처리방법: 연구장려금을 지급 받은 즉시 연구착수금 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, 잔여 연구장려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자로부터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의 진행상황에 따라 작 성하는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받아 동 진행율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되, 1회에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※ 연구장려금은 소득세와 관련 없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
#### • 연구계획 변경

- 원칙적으로 연구과제명(학위논문명), 지도교수 등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연구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승인 받아야 함
- 지도교수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내에 연구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연구기간 종료 1개 월 전까지 연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

#### • 연구결과보고

- 제출시기 : 최초 연구장려금 지원 후 3년 이내
- 제출서류
  - 연구결과개요보고서 5부
  - 논문초록 5부
  - · 최종학위논문(제본된 양식) 5부
  - 박사학위논문심사 통과 증명서(확인서) 1부

#### 나. 연구기간

- 10개월 (2006.10.27 ~ 2007.8.31)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경우 2 년(22개월) 연구도 가능함
- · 2년연구(22개월)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정분량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함
- 연구결과물의 평가에서 '계속지원 적합 판정'을 받아야, 다음 연도의 연구비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음

#### 5. 연구비 신청

#### 가. 연구비 신청 자격

-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: 공동연구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로 하고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의 공동연구원은 교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
- 보조연구원은 본교의 석·박사 학위 과정생(수료자 포함). 단, 보조연구 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연구기간 내 졸업 등의 이유로 신분이 변동되더라도 기존의 자격을 인정함

#### 나. 제외대상

- 2008년 3월 이전 정년 도래자
- 2006년도 한국학 연구사업 또는 학제간 협력연구비 수혜(예정)자
-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비 지급중단 또는 회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받 은 자
- 연구기간 중 연구 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자
- 학내외 각종 연구과제 수행자로서 당초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(공동연구원 포함)
  - \* 연구기간 또는 결과보고기한 연장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제한대상임
- 교내·외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인한 제재조치 로 연구비 반납과 향후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조치 통보를 받는 등 연 구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재조치 기간에 있는 자
- 계약교수(BK21 등)
-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의 경우, 2007년 3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

#### 다. 참여과제수의 제한

•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당 1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

#### 라. 연구비 신청방법

· 소정의 서식(연구계획서, 실행예산서, 연구참여자 연구활동 상황 등이 포함된 "통일학연구비 지원 신청서")<서식1>에 의한 신청서 5부(첨부 서류 포함)를 갖추어 소속기관(대학, 연구소(원) 등)에 제출하고, 소속 관리기관은 일괄취합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통일연구소에 신청

- 신청서 규격 및 분량 : A<sub>4</sub> 용지 10쪽 내외
- 글씨체 : 신명조체 11 point, 줄간격 180.
- 지원신청서 내용에는 연구과제명, 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, 연구의 개요(목적, 내용, 방법, 예상 목차 등),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,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계획,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등을 포함
  - 단, 논문지원과제 및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의 경우 연구비 예산서 는 제출하지 않음
- ※교내연구자의 연구실적목록 (2003년 이후 발표)은 정보광장 (http://it4u.snu.ac.kr)에서 출력한 인쇄물을 현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▶출력방법 : 정보광장(http://it4u.snu.ac.kr) → 학사행정 → 교수업적 → 업적조회

     → 연구 및 창작활동 → 조회조건(2003년 ~2006년) → 미리보기 → 인쇄
- ※교외연구자의 연구실적 목록은 별첨<서식 1>을 참조하여 작성
- 신청서 내용 중 예상 목차는 각 장, 절의 개요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.
- 연구비 실행예산편성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 예산 배정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,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부적절할 경우에는 연구자와 협의하여 수정함.
- 다년도 과제(자유과제중 공동연구)의 경우, 연구목표는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,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가 연구내 용과 명확한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함
- <항목별 연구비 명세 및 산출내역>을 제출할 시에 모든 연구비 예산 항목은 유사한 다른 연구 사례와 비교하여 과다 책정여부를 검토하는 바, 구체적이고 자세한 명세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

#### 6.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

#### 가. 심사절차

- 단계별 심사로서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심사.
  - 1단계 심사(개별심사) : 분야별 3명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기준 표에 따라 평가하는 심사.

- 2단계 심사 : 1단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연구소 연구사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.

#### 나.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

- 심사기준 기본워칙
  - 세계적으로 통일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좋은 점수 를 줌.
  - 기초연구에 좋은 점수를 줌.
- 심사기준 및 배점

		배점	배점
항 목	시 기 기 ス	(기획/자	(박사학
항 목 	심 사 기 준	유/논문지	위논문지
		원과제)	원과제)
1.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의 참	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의 참신성 과 창의성의	30	30
신성과 창의성	정도	30	30
2.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	연구업적의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판		
연구업적 및 연구수행능력	단되는 연구진의 연구 수행능력과 전문	20	30
전문성	성의 정도		
3. 연구목적의 구체성과 명확성	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연	20	20
3. 연구즉석의 구세성과 당확성	구의 필요성이 높은 정도	20	20
4. 연구결과의 통일학 연구에	기존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충실히 반영한	30	20
기여도 및 학문발전 공헌도	정도	30	20
4개 항목	총 점	100	100

※ 평정등급 및 등급별 점수 : 항목별 A, B, C, D, F 5등급으로 평정

예) 배점이 30인 경우 A=30, B=24, C=18, D=12, F=0 배점이 20인 경우 A=20, B=16, C=12, D= 8, F=0

#### 다. 지원과제 선정 방법

- 연구계획서 1단계 심사 점수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선정
- 연구비 지원과제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비 감액조정 등 연구계획서의 변경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수락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
#### 7. 연구비 지급 및 관리

#### 가. 연구계약서 제출

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된 연구책임 교수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7
 일 이내에 소정의 <연구계약서>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함

#### 나. 연구비 지급 및 정산

- 지급기관
  -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관리기관(대학(원), 연구소(원) 등)에서 중앙관리함
- 지급시기 및 정산: 연 1회 지급
   (단, 다년도 과제의 경우 2차분 연구비 지급은 〈연차실적·계획서〉심 사후 지급)
- 연구기간 만료시 〈결과보고서〉와 함께 〈연구비 사용 정산서〉제출 (소정서식 사용)
  - ※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별 연구비 정산은 생략(연차실적평가 탈락 또는 연구기가 만료시 정산)

#### 다.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

-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.
  -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
  - 연구 수행 중,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연구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  - 연차실적·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 았을 경우
  -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#### 라. 연구계획의 변경

-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제출기한 도래 이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.
  - 연구책임자/공동연구원/보조연구원이 연구수행 중 해외여행, 사고, 질병 및 기타사정으로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원 을 변경할 경우
  -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
    - · 당초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. 연장신청시

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신청할 것

-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
- 연구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(단, 내용 변경은 불허함)
- 연구계획변경 관련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(http://tongil.snu.ac.kr) 의 자료실이나 연구처 홈페이지(http://research.snu.ac.kr) 자료실(연구비 관리양식)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.

#### 8. 연구결과의 심사와 활용

#### 가. 연구결과물의 제출

- 제출시기: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(단, 연차실작계획서를 제출하는 다 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)
- 연구결과물 제출 자료: ① 연구결과보고서 1부, ② 연구결과물 5부, ③ 요약문 5부, ④ 연구비사용정산서 1부를 통일연구소에 제출함
  - 연구결과보고서, 요약문, 연구비사용정산서 등과 같은 제반 서식은 연구소 홈페이지(http://tongil.snu.ac.kr)의 자료실에 있는 서식을 준용함

#### 나. 연구결과물의 심사

- 연구결과물의 심사
  - 연구결과물 접수 후, 통일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와 주제에 따라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함
  - 연구결과의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,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연구는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

#### 다. 연구결과물의 출판

심사평가에서 소정의 등급이상을 얻은 연구결과물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'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' 및 '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신서'로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## 라. 연구결과의 권리귀속 등

- 연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동활용
-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(저작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)은 재단 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에 귀속되며, 지적재산권의 활용·처분에

따른 기술료 수입 등은 서울대학교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

#### 마. 결과보고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

-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
  - 연구비 회수 및 향후 5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함.
- 연구자들이 임의로 개별 단행본 출판 또는 논문집에 게재한 경우
  -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
- 원고 분량의 현저한 미달
  - 향후 3년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제한함

#### 9. 향후 추진일정

- 신청공모 안내 : 2006. 9. 1. ~ 2006. 9. 22.
- 신청서 접수 마감: 2006. 9. 22.
-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: 2006. 9. 25. ~ 2006. 10. 17.
- 2단계 심사(통일연구소) : 2006. 10. 18. ~ 2006. 10. 22.
- 선정통보 및 연구계약서 제출 : 2006. 10. 23. ~ 2006. 10. 27.
- 연구비 지급 : 2006. 10. 31

#### 10. 붙임 서식

· 2006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신청서식 1부. (연구계획서, 실행예산서, 연구참여자 연구활동상황 서식 포함)

#### <서식 1>

## 2006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신청서

	접수번	ই 💥	과제박	번호	*		
구 분		자유과제	기획고	<b>}</b> 제	논문지원과제		
	단독연구	( ) 공동연구( )					
연구과제명	(국문) (영문)						
		 대학	 학과				
연구책임자	성 명:		직 급:				
	☎(구내)	(자택)	(휴대전화)	(전	자우편)		
75 17 0	대학교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: (٩	인) 직급 :	7	
공동연구원 (총 명)	대학교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( (	인) 직급 :		
(50 6)	대학교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: (4	인) 직급 :	<b>7</b>	
	박사과정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(인)	)		
보조연구원	7/14/8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(인)	)		
(총 명)	석사과정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(인)	)		
	7/14/8	대학(연구소)	학과 성명:	(인)	)		
연구기간	2	2006년 10월 27일	~ 200 년	월 일	( 년	개월)	
연구비신청액	1차년도						
연구미신성액	2차년도						

본인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을 준수하면서 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 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
#### <첨부서류>

- 1. 연구계획서 1부.
- 2. 실행예산서 1부.
- 3. 연구 참여자 연구실적 1부.

2006년10월일신 청 인(인)

###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

#### ◎ 주의

• 연구논문을 외국어로 발표할 예정인 경우에는 제목을 영문으로 반드시 기재할 것.

### Ⅰ. 연구 계획서

1. 연구의 필요성

#### 2. 연구의 개요

※ 2년 이상 다년도 과제의 경우, 연구목표는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최종목표와 연 차별 목표가 연구내용과 명확한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

가. 연구목적

나. 연구내용

다. 연구방법

라. 예상목차(※ 각장, 절의 개요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드러나게 작성)

3. 국내외의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

※ 국내외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

4.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(통일학 발전에의 기여도 등)

5. 연구결과의 활용계획

6.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분담계획

7. 참고문헌

### II. 실행예산서: 항목별 연구비 명세 및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	항 목		청	액	산	<u>출</u>	내	역
1	· 전임연구인력 급여							
인건비	• 연구보조원 수당							
소 계								
	· 연구활동비							
	• 연구회의비							
② 연구	• व्येभ							
활동 경비	· 집필료							
	· 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							
	· 공공요금 등 잡비							
	소 계							
	· 조사연구비							
③ 직접성	· 문헌 및 재료구입							
경비	· 장비사용료(임차료)							
	· 연구기기비							
	소 계							
④ 간접비	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				
	소 계							
	합계							

<sup>※</sup> 붙임〈항목별 산정·집행기준〉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, 2년 과제인 경우, 연차별로 각 각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함.

<sup>※</sup> ④항목의 간접연구경비(총연구비의 5%)는 모든 과제에 해당

### 〈통일학 연구비 항목별 산정·집행기준〉

(단위 : 천원)

항 목	भ <del>8</del>	산정·집행기준
① 인건비	·전임연구인력 급여 박사학위 소지자 급여(연구책임자 및 전임강사 이상 의 공동연구원에게는 인정하지 않음)	- 월 100만원 이내
	·보조연구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(석·박사급)의 수당	- 석사과정생은 연 360만원 이내(월 30만원) - 박사과정생은 연 480만원 이내(월 40만원)
	·연구활동비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	- 연구책임자 및 전임강사 이상의 공동연구원에게 연 300만원 이내(전임연구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인정하 지 않음)
	·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, 세미 나 개최, 국내외 정보D/B 네트워크(DNS) 사용료, 해 외기술정보 수집비, 평가회의비(수당) 등	-실제 소요액 : 회의를 할 경우,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함,
② 연구 활동경비	·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, 현지교통 비,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	-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, 보조연구원의 여비로서 관리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되 실제출 장일수, 인원, 횟수를 인정함 -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,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(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)
활동경비 	·집필료	- 집필료를 연구책임자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 가능(전임강사 이상에 대해서만 집필료 계상)
	유인물비(인쇄비, 수용비)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조사지 인쇄, OHP 복사, 슬라이드 제작, 사진 현상 등에 필 요한 경비	- 유인물비는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
	·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,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보험금, 각종 수수료 등	-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- 개인용 전화, 호출기,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와 학회가입비, 학회연회비 납입 영수증, 연구와 관련 되지 않는 학술지의 정기구독료 영수증은 인정하 지 않음.
	·조사연구비 현지 조사시 여론 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	-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
	·재료 및 문헌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(도서, 출판물 등)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, 기구, 소모성재료,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	-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
③ 직접성 경비	·장비사용료(임차료)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(장비, 기기)의 사용료, 분석료,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(컴퓨터 사용료)	-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
	·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(전산장비, S/W포함)와 부수 기자 재(개인용 PC 및 Printer 구입은 불인정)	- 품목,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- 실제 소요액
④ 간접비	·간접연구경비(관리기관분)	- 간접비(총연구비의 5%)

### Ⅲ. 연구참여자 연구활동 상황

1. 연구업적(연구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) 가. 연구책임자 (성명: )	
(1) 단행본	
(2) 논문	
(3) 기타	
나. 공동연구원 ( 성명 :	
(1) 단행본	
(2) 논문	
(3) 기타	
□ 주의사항	
i) 2003년 이후부터 발표한 저서, 논문 등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.	
ii)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각각에 대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, 자료가 제되지 않거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업적이 없는 것로 간주됩니다.	
2. 통일학 지원 이력	

할 등을 모두 기입하시오.)

(통일학연구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적이 있으신 경우, 과제년도 및 과제명, 지원액수, 역

연도	구분 (단독/공동 /연구소)	연구과제명	연구비 (단위: 천원)	역 할 (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)

<서식 2>

## 2006도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비 지원신청서

(사업명: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(연구장려금))

	성 명		(인)	주민등록	번호			-	
	, ,		대학(원)	학과(부)					
신 청 자	소 속		(			전공)			
	박사학위과	1.4	61	재학 및	재	학	:	학기	
	정입학년월	년	월	수료구분	수	豆	:	년	월
박사학위논문	(국문)	1							
예정제목명	(영문)								
박사학위논문제출	년	월 (해당/	را الا	학위	논문제	출여	]정	ان	년 월
자격종합시험통과			아만 기기	(악위	1수여			ĩ	1 별
학 위 논 문	소속대학(유	원) :			학과(년	,	:		
지도교수	직급:				성 「	녕	:		
) =11	자택(주소)								
신 청 자   연 락 처	(전화)				HP:				
연락 처	사무결(전 전 화 :	구실) 주소	:	E-mail	١.				
	천 화 :	년	월		i : (학위 1	j ·			)
	-	<u>년</u> 국문 :	근	근 '	<u> </u>	o <b>.</b>			
석사학위취득		명문 :							
		<u> </u>		취 득		대학	-(원)	힉	과(부)
	시도╨ㅜ (		전공)	대학(원)	(				전공)
참고사항									
(국내외 연구활동 경력)									
	본인은 상기	기 박사학위	논문연	구지원 신청	적격2	자로시	네 서울	날대학교	! 연구비
관리규정을 준수하	고 위의 연구	를 성실히 =	수행하.	고자 소정의	서류를	를 첨트	부하여	연구비	지원을
신청합니다.									
〈첨부서류〉									
1.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2. 박사학위논문 연구추진일정 1부 3. 지도교수 추천 및 확인서 1부. 끝.									
│2. 막사악위돈둔 연 │3. 지도교수 추처 !	!구수신일성 민 화이서 1부	l 무 L <i>끋</i>							
0, 12221 112	^ 16   1	. E.			20	006	년	월	일
		_		신 청	인				(인)
서울대학교	총장 귀	하							
	•								

- ※ 신청서는 소속대학원을 통해 통일연구소에 제출[연구소(원)를 통한 접수불가]
- ※ 국내외연구활동 경력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
- ※ 연구본문을 외국어로 발표할 경우에는 영문제목을 반드시 기재

## I.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

### 1. 연구목적 (필요성)

(연구주제의 독창성, 학문발전 공헌도, 주제의 창의성, 방법의 창의성, 학문 적 가치, 학문의 파급효과)

2. 연구수행 계획(연구의 배경· 방법· 내용 및 실행계획 등)

3. 국내외 연구활동

4. 기타사항

5. 참고문헌(선행연구내용 포함)

# Ⅱ. 박사학위논문연구 추진일정

추진일정 ( 년 월)	학위 논문 수행 내용	비	고

<서식 3>

# 지도교수 추천 및 확인서

(2006년도 박사학위논문연구지원과제)

	소	속	대학	(원)	학고	과(부) (	재학□	], 수료□(	년	월	일)
피추   천자	주민등록	÷번호		-	-						
선시	성	명									
추천 의견	w. Ol ¬ A ÷		매드 취이라드			10 1					
	※ 연구수힘	뱅능력, 년	대도, 학위취득	가능성	성, 주전시	h유, 논년 미취역		계획 능을 구	제석으	로 기	새 함
확인	취업여부(정규직으로 전일제 근무)										)
사항	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(종합)시험통과여부					미통고	<sup>라</sup> □,	통과□ (		년	월)
	박사과정	수료여	부			미수회	Ξ □,	수료□ (	,	년	월)
상:	기 내용과	같이	학위연구논	문을	지도하다	며, 논든	문지도	교수로서	아래	책임	임사
항을	준수할 것	선을 확	인합니다.								
				2006	6년	월	일				
					속:						
				직	위:						
5 ×11 A1	\1 <del></del> 1 -			성	명 :			(0	<u>'l)</u>		
- - 신 - 신	!청자가 성 !청자의 신	성실하 <i>거</i> 신분 변	사업의 신청    논문연구야 동시 소속대 으로 인한 지	Ⅱ 전' 학(원	겸하도록 )을 통한	- 지도 } 통보	및 김				
서울1	대학교	총장	귀하								